

스톡옵션 행사방법 계약조항 준수 - 서면형식 요구와 달리 담당 임원에게 이메일 통지

BUT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

단266461 판결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관련 조항

제4조 행사기간: 2016. 3. 22. ~ 2019. 3. 21.

제5조 (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별도

양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2. 스톡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메일 발송

퇴직 전 행사기간 내 회사의 재무이사, 공시책임 임원인 상무에게 “현재 보유중인 스톡 옵션(4만주)를 행사하고자 오늘(12/15)로 그 의사표시를 하니,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3. 회사의 스톡옵션 거절에 대해 퇴직 후 내용증명 발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명의로 퇴직 후, 행사기간 도과 후인 2020. 8. 24.경 “위 이메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40,000주를 퇴직자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4. 법원 판결 요지 -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퇴직자의 청구 기각 판결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스톡옵션 행사 방법에 따른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임직원들 중에도 위와 같이 회사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톡옵션 행사를 통보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 스톡옵션을 회사에

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메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을 행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19. 3.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 방법에 따라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

스톡옵션, 회사소송, 기술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